

2018. 2. 7.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BvR 442/15

#반론보도
#잡지 표지
#헤드라인
#출판자유
#숨겨진 사실주장

NJW 2018, 1596

반론보도 게재의 부당한 의무와 언론자유

기본법 제5조 제1항 2문; 라인란트팔츠 언론법 제11조 제1항 제1문

1. 신문의 표지에 내용적으로 (답이) 열려 있는 문제가 제기된다면, 그 문제제기를 위한 어떤 계기가 존재한다는 인상만으로 반론보도가 가능한 사실주장이 인정될 수는 없다. 진실 혹은 허위의 탐구로 향해져서 다양한 대답을 위해 열려 있는 질문은 어떠한 반론보도청구권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2. 일반적 인격권의 고려 하에 반론보도가 불가능한 질문 형태의 헤드라인에 대한 보호필요성이 존재한다면, 다른 언론법상의 제도, 특히 금지청구소송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의 인정을 통해 고려될 수 있다.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지정부), 2018. 2. 7.자 결정-1 BvR 442/15

사실관계

헌법소원은 민사판결에 대해 대항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반론보도 게재에 관한 소송 비용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그의 언론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주간지 발행인이고, 2012년 주간지 표지에서 한 텔레비전 진행자와 관련된 문제를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의 사망사건-그는 당시에 그를 구조할 수 있었을까?”라는 제목으로 공표했다. 제목에 딸린 기사는 당시의 한 진행자의 학급친구가 1982년에 치명적인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이 때 두 사람은 이미 오래 전부터 어떠한 교류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것이 신청인에게 알려졌다. 청구인은 마지막 심급인 Zweibruecken 상급법원을 통해 진행자의 반론보도 게재에 관한 패소판결을 받았다. 첫 번째 헌법소원으로 헌법재판소는 (제1재판부 3지정부, NJW 2014, 766) 판결을 기각하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왜냐하면 해당 법원이 표지 위의

의문문의 성격 분류에 대해 기본법의 요청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현재 반론보도를 게재했고 가치분신청자는 원심절차가 처리된 것으로 선언했다. Zweibruecken 상급법원(NJW-RR2015, 561)은 최종적으로 가치분 절차의 처리확정을 선고했고 청구인은 비용을 지급했다. 왜냐하면 청구인은 마땅히 반론보도 게재의 의무를 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새로이 제기된 헌법소원은 성공했다.

판결이유

13. II.(...) 1. 헌법소원은 허용된다. 헌법소원에는 법적 보호필요성이 부족하지 않다. 반론보도 게재에 대해 공격된 판결을 통한 본안사건의 처리 확정에도 불구하고, 원래 소송대상이었던 반론보도의 적법성 해명에 관한 계속적인 청구인의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한다(vgl. 연방헌법재판소[제1재판부 3지정부], NJW 2014, 766[767]; 연방헌법재판소[제1재판부 1지정부], NJW 2004, 1235).
14. 2.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93조 제1항 제1문의 의미상 명백히 이유 있다. 공격된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문에 근거한 출판자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15. a) 출판자유의 보호범위가 관계된다.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문의 보호중심에는 출판물의 발간과 구성의 자유가 존재한다. 구성의 자유는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상 관점 역시 보장되어야 하고 어떤 주제를 다룰 것이며 어떤 기사들이 발간물에 수록되어야 하는지의 결정뿐만 아니라 발간물 안에서의 기사의 외적 모습 및 기사의 배치 역시 포함한다. 출판의 자유의 보호는 공표물의 표지에도 미친다(vgl. 연방헌법재판소 97, 125[144]=NJW 1998, 1381).
16. b) 청구인 잡지 표지 위의 반론보도 게재의무는 그의 출판의 자유권을 침해한다. 잡지 표지에 따라오는 특별한 의미를 고려하면, 그러한 침해는 통상 심각한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vgl. 연방헌법재판소 97, 125[145]=NJW 1998, 1381]). 잡지 표지는 수많은 출판물들 중 자신의 출판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각인시키고 독자들에게

인식표지로서 기여한다. 게다가 잡지표지에는 출판물의 책임자들이 출판상 혹은 광고전략상 이유에서 특히 중요하게 공표하는 그러한 보도들이 포함된다. 그 때문에 표지의 인쇄기술적 혹은 그래픽적 구성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점은 정기구독물이 아니라 가판대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그 때문에 모든 발간에 있어서 독자의 관심을 위해 새롭게 광고되어야만 하는 신문이나 잡지에서 중요하다(연방헌법재판소 97, 125[144]=NJW 1998, 1381).

17. c) 출판의 자유의 침해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상급법원은 라인란트 팔츠 언론법 제 11조의 기본권제한을 가처분신청인에게 반론보도청구가 인정된다고 판결하는 방식으로 규정의 적용범위를 과도하게 연장했다. 따라서 상급법원은 출판자유 의미와 사정거리를 충분히 주의하지 않았다.
18. aa) 라인란트 팔츠 언론법 제 11조 제 1항 제 1문에 따르면, 언론의 원보도 사실에 대해서는 반론보도가 가능하다. 원보도와 반론보도의 종속성의 관점에서 출판자유는 원보도가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기본법 제 5조 제 1항의 요청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석되고 분류될 것을 요구한다. 만약 반론보도가 상응하는 사실주장이 앞서 선행되지 않았을 때에도 게재되어야 한다면 이는 출판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원보도가 사실주장이 아니기 때문에 반론보도가 법적 근거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경우에도 게재되어야 한다면 이때에는 출판자유 위반이 존재하게 된다(연방헌법재판소 97, 125[150f.] = NJW 1998, 1381).
19. bb) 상급법원에 의해 조사된 표지제목의 내용 “J-그의 친한 친구에 관한 사망사건- 그는 당시 그를 구조할 수 있었을까?”는 이에 따라 어떠한 반론보도청구권도 근거 지울 수 없었다. 해당 질문에는 충분한 사실적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20. (1) 입법자의 판단에 따르면, 반론보도청구권에는 언론의 사실주장에 관련된 사람들은 사실적 사건에 관한 자신의 설명과 함께 보도에 맞설 수 있다는 구조가 바탕이 된다(vgl. 연방헌법재판소 97, 125[146]=NJW 1998, 1381; 연방헌법재판소 63, 131[142]=NJW 1983, 1179; 연방헌법재판소 합의재판부 판례집 13, 97[105]=NJW 2008, 1654). 이러한 범위를 넘어선 반론보도의 확대 - 가령 언론을 통한 의견표현에 대한 - 는 이러한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연방헌법재판소 97, 125[147]=NJW

1998, 1381). 반론권은 따라서 입법자에 의해 특수하게 제한된 수단으로서 형성되었다. 반론권은 당사자에게 자신에 관해 전파된 사실주장에 직접 내용상으로 맞서고 그와 함께 그의 진실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을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서 반론권은 분명히 사실주장의 진실내용과는 무관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표현의 객관적 적법성과는 무관하게 보장되는 보호수단이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표현들에 대해 보호해야 하는 제재수단으로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다른 사실설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통해 특정한 내용의 사실주장이 공중에게 사실이라고 견고하게 인식되는 것을 저지할 특유의 기능을 가진다. 당사자는 이와 같이 진실의 문제를 당분간 미결정 상태로 둘 가능성을 얻게 된다(vgl. 연방헌법재판소 97, 125[148]=NJW 1998, 1381; 연방헌법재판소 합의재판부 판례집 13, 97[105f.]=NJW 2008, 1654; 연방헌법재판소[제1재판부 1지정부], NJW 2002, 356[357]). 어떤 표현이 최종적으로 그의 편에서 진실한지 그리고 어디까지 발언자가 그의 발언과 내용상 거리를 두거나 향후에 발언을 중지하도록 강요되는지의 문제는 불가피한 경우에 다른 소송에서, 가령 중지소송이나 취소소송에서 해명될 수 있다. 이러한 특유의 제한된 기능에서 표현법은 그의 운곽을 얻게 되고, 그러한 운곽으로부터 마찬가지로 소송법상 그의 관철이 결정된다.

21. (2) 이러한 입법자에 의해 정해진 반론권의 구조는 상급법원이 하나의 열려 있는 헤드라인 질문에서 문제제기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점이 존재한다는 숨겨진 사실주장을 억지로 끄집어내서 해석할 경우 그 본질이 훼손된다. 이처럼 라인란트 팔츠 언론법 제11조 제1항 제1문에 따른 반론권의 법적 경계를 넘어서게 됨으로써 출판자유의 관점에서 반론제재의 부과를 정당화하는 토대가 부족하게 된다.
22. 물론 헌법상 반론보도요구가 숨겨진 사실주장에 관해서도 보장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려스럽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숨겨진 진술이 이성적 독자에게 피할 수 없는 추론 결과로서 확실히 떠올라야 하고, 이 경우에 반론보도가 가능하다(vgl.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집 13, 97[102ff.]=NJW 2008, 1654). 출판자유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원보도내용의 의미 조사가 이성적 수용자에게는 언론보도의 전체맥락상 하나의 특정한 인상이 피할 수 없이 떠오르게 된다는 점을 밝혔다면, 이러한 인상 에 대한 반론보도 역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특정한 사실에 해당하는 인상이 그 전제이다(vgl.

Bremen 상급법원, NJW-RR 2001, 186[187]; Muenchen 상급법원, Afp 2017, 322[323]=BeckRS 2017, 119644; Dresden 상급법원, NJW-RR2017, 1258 Rn. 6ff.; vgl. 또한 연방헌법재판소[제1재판부 3지정부], 기본법 제103조 제1항에 대한 NJW 1993, 1461[1462]).

23. 질문에 연결된 반론보도 역시 사정에 따라 헌법상 배제되지 않는다. 물론 질문은 의견자유의 관점 하에서 통상 가치 판단과 동일시된다. 질문이 진실 혹은 허위의 조사로 향해져서 다양한 대답에 열려 있다면(vgl. 연방헌법재판소판결집 85, 23[32]=NJW 1992, 1442), 그것은 반론보도가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 경우 사실이 주장된 것이 아니라 아마도 추구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질문과 함께 분별력 있는 해석을 할 경우 독자적인 하나의 특정 사실주장이 전파되었을 때 사정은 다를 수 있다. 기본법 제5조 제1항의 의미조사에 대한 헌법상 요청은 그런 점에서 인상에 대한 반론보도의 요청들과 일치한다.
24. 내용상 열려 있는 헤드라인 질문의 제기에 그 어떤 계기가 존재한다는 인상만으로는 그에 대해서 반론보도가 가능한 사실주장의 전제를 충족시키지는 않는다. 모든 질문은 특정한 대상과 관련됨으로써 그의 제기과정에 따라 그의 대상에 관해 뚜렷하든 뚜렷하지 않든 사실 혹은 평가적 방식의 전제를 포함한다(vgl. 연방헌법재판소 85, 23[32]=NJW 1992, 1442). 상급법원의 해석에 바탕이 된, 질문은 의미 없이 제기된 것이 아니라는 전제 역시 이에 속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러한 혼란스러운 전제 하에서는 그의 진실내용을 반론권의 의미에서 잠정적으로 미결정상태에 둘 수 있는 특정한 내용을 가진 독자적 정보의 전파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한 헤드라인 질문은 관련된 사람들이 공적 토론의 대상으로 삼아도 되는지, 어디까지 되는지에 관한 문제를 던진 것일 수 있다.
25. 이것은 반론보도로써 그러한 경우를 위한 적합한 텍스트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 청구인의 비용결정에 바탕이 된 판결을 통해 의무를 부담하게 된 반론보도는 어쨌든 이에 관한 요청을 소홀히 했다. 반론보도로써 작성된, 원고는 그의 친구를 구조할 어떠한 가능성도 가지지 못했다는 주장을 원고는 한 적이 없다.

26. (3) 물론 일반적 인격권의 관점에서 헤드라인 질문에 대해서 역시 보호필요성이 존재할 수 있다. 이것이-여기처럼- 어떠한 특정한 사실주장도 포함하지 않는 한, 다른 언론법상 제도를 통해 당사자의 보호필요성이 고려될 수 있다. 헤드라인 질문의 형태로 치장한 명예훼손적 질문이나 사적 사안의 부당한 논의 역시 금지청구소송으로 저지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단지 매상증가를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이거나 혹은 제3자의 희생에 대한 정당화 없이 의도적으로 피해를 주는 표현이 문제시되는 한, 그런 점에서 액수에 대해 이것이 실제적 보호에 이를 수 있는 정도로 산정될 수 있는 손해배상의 인정 역시 고려된다(vgl. 연방대법원민사부 128, 1[12]=NJW 1995, 861=GRUR 1995, 224; 연방대법원 민사부 160, 298[307]=NJW 2005, 215=GRUR 2005, 179; vgl 또한 연방헌법재판소[제1재판부 3지정부, NJW-RR 2017, 879[881]]).
27. 가치분절차의 처리가 확정되고 청구인에게 비용이 부과된 대상 판결은 제시된 헌법상의 오류에 근거한 것으로 파기되어야 한다. 상급법원이 새로이 심리할 경우 사건에서 다른 결정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점이 배제되지 않는다.